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시 보

제1881호

2020년 9월 3일 (목)

차 례

입법예고

○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20-143호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20-144호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4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공고 제2020-1호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7

고 시

○ 파주시 고시 제2020-240호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8

회람									

발 행 : 파 주 시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20-143호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계법령과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정비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행업체 선정 방법 및 대행계약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의 용량별 무게 상한을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마련을 위하여 관리원칙을 규정함(안 제14조)

○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소 용량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가격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규정함 (안 별표 1, 별표 5)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9월 2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 (우 10932)
- 전화 : 031-940-4731 / FAX 031-940-473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20-144호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전부개정 함에 따라,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 생활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을 보다 명확히 정함(안 제6조)

○ 건축물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

○ 소 용량 종량제 봉투의 제작 규격을 마련함(안 제12조)

○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기준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정함(안 제20조)

○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규정함 (안 제21조)

4. 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9월 2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 (우 10932)
- 전화 : 031-940-4731 / FAX 031-940-473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공고 제2020 - 1호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및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및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폐지이유

○ 2014년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신설되어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1996년에 제정된 유사 조례들과 주요 내용이 중복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명칭사용 등으로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이에 농기계 관련 조례들을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해 위 조례들을 폐지하고, 폐지조례 내용 중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존치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및「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년 9월 23일 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 우편 · 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파주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 주소: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파주농업기술센터 (우 10944)

○ 전화 : 031-940-4918 / 팩스 : 031-940-5279

파주시 고시 제2020 - 240호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88호(2009. 6. 12.)로 정비계획 지정·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7-87호(2017. 5. 2.) 및 제2018-107호(2018. 5. 11.)로 정비계획 변경·고시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의 파주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9. 3.

파 주 시 장

1. 정비사업 명칭 (변경없음) : 파주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계		35,772.00	-	35,772.00	10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35,772.00	-	35,772.00	10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다.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총 계		35,772.00	-	35,772.00	100.00	
획 지	소 계	28,154.00	감) 16.00	28,138.00	78.66	
	공동주택용지	24,690.00	감) 16.00	24,674.00	68.98	변 경
	종교용지	3,464.00	-	3,464.00	9.68	존 치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7,618.00	증) 16.00	7,634.00	21.34	
	도 로	3,879.00	-	3,879.00	10.84	
	공 원	1,133.00	-	1,133.00	3.17	
	녹 지	2,016.00	증) 16.00	2,032.00	5.68	변 경
	노외주차장	590.00	-	590.00	1.65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08	파주 금촌2동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5,772.00	-	35,772.00	-

3.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3	20 ~26	보조 간선	1,050	102호광장 금촌동 962-15도	대3-101 금촌동 329-256대	일반 도로	건고 제74-286호 (1974. 8. 24.)	
기정	중로	2	109	15	국지 도로	172	중로1-103 금촌동 343-6	소로1-금촌1 금촌동 314-3	일반 도로	파고 제2008-52호 (2008. 5. 14.)	
기정	중로	3	116	12 ~14	국지 도로	136	소로1-금촌1 금촌동 327-31	중로1-103 금촌동 329-137	일반 도로	경고 제09-5088호 (2009. 6. 12.)	
기정	소로	1	금촌1	10 ~13	집산 도로	551	중1-103 금촌동 329-104	소로1-금촌14 금촌동 73-23전	일반 도로	경고 제90-8호 (1990. 1. 5.)	

나. 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기정	137	공 원	소공원	금촌2동 340-14	1,133.00	-	1,133.00	경고 제09-5088호 (2009. 6. 12.)	

다. 녹지 결정조서 (변경)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변경	110	녹 지	완충 녹지	금촌2동 334-112	2,016.00	증) 16.00	2,032.00	경고 제09-5088호 (2009. 6. 12.)	변경

라. 노외주자차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기정	106	주차장	노외 주차장	금촌2동 334-122	590.00	-	590.00	경고 제09-5088호 (2009. 6. 12.)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변경 전

구 분	기 준	기 준 면 적 (㎡)	계 획
주민 공동시설	·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설치	· 500㎡+(세대수X2㎡)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 면적 이상 확보
관 리 사무실	· 50세대 이상의 경우 : 10㎡에 50세대를 넘는 세대마다 0.05㎡를 더한 면적(100㎡ 초과시 100㎡로 설치 가능)이상 확보	· 10㎡+(세대수-50세대)X0.05㎡ 이상	
근린 생활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 · 상점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	-	

나. 변경 후

시 설 종 류		기 준	계 획(㎡)	비 고
관리사무실		· 10㎡+(세대수-50)X0.05=60.25㎡ 이상	155.00	규정 제28조
주민공동시설	소 계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 500+(1,055*2) = 2,610㎡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으로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은 지역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며, 주민공동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여 거주자의 만족도 제고	2,612.00	규정 제55조의2 총량제
	경로당		169.00	
	어린이 놀이터		1,239.00	
	어린이집		345.00	
	주민 운동시설		193.00	
	작은도서관		39.00	
	주민공동 이용시설		627.00	
기타사항		· 그 외의 언급하지 않은 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금촌2동 제2지구	35,772.00	획 지	24,674.00	금촌2동 337-15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00 이하	조합 250.00 이하 뉴스테이 300.00 이하	87m 이하
		종교용지	3,464.00	정비구역내	종교집회장	60.00 이하	180.00 이하	4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도시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
환경보전	자연경관	· 절·성토의 균형고로, 지형변화의 최소화 · 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 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목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자연토양유지 및 녹지면적의 확대로 포장률을 억제하고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 통	· 주변가로망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차량 진·출입구를 분산하여 계획 · 도로는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상충이 최소화 되도록 유도함으로서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도록 계획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합한 도로선형 및 주차출입구 배치
	화 재	· 공동주택 부지 내 소방차가 진입하여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 ·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를 도모하고 화재위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table>
<tr><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h>비 고</th></tr>
<tr><td>종 합</td><t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하여 반영하여야 함.
· 사업부지와 약 40m 거리에 금촌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공사 시와 사업완료 시로 구분하여 대책을 수립함.</td><td></td></tr>
<tr><td>공사 시</td><td>·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이하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저감대책 마련
- 생활소음 규제기준
<table>
<tr><th>구 분</th><th>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th><th>낮
(08:00~18:00)</th><th>밤
(22:00~05:00)</th></tr>
<tr><td>주거지역 내
공사장</td><td>60dB(A) 이하</td><td>65dB(A) 이하</td><td>50dB(A) 이하</td></tr>
</table>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비고)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함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생활진동 규제기준
<table>
<tr><th>구 분</th><th>주 간
(06:00~22:00)</th><th>심 야
(22:00~06:00)</th></tr>
<tr><td>주거지역</td><td>65dB(V) 이하</td><td>60dB(V) 이하</td></tr>
</table>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수립
- 공사에 따른 분진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살수장치 설치</td><td></td></tr>
<tr><td>운영 시</td><td>· 어린이 통학을 고려한 안전시설 설치
- 안전표지판, 도로표지,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 설치
· 추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시 스쿨존 계획 등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td><td></td></tr>
</table>

8.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없음)

가. 세입자의 보호대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나. 기준일 3월 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

다.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작성하여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할 것임

9.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변경없음)

가. 변경 후: 정비구역지정(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시 행 방 법	사 업 시 행 자	자금조달	비 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방식)	파주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민간자본	-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명 칭	면 적(㎡)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합계	존치	개수	철거	철거·이주	
기정	금촌2동 제2지구	35,772.00	금촌2동 337-15번지 일원	147	3	-	144	-	-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변경)

가.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참조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건축한계선	· 북동측 소로 1-금촌1호선 폭 6.5m이상 확보 · 북서측 중로 1-103호선, 중로 3-116호선 폭 6m이상 확보 · 남동측 중로 2-109호선 폭 6m이상 확보	

1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범죄예방기준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도록 함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며 건축물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내건축제도와 기준에 따른 건축설계를 하도록 함

16.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결정 구분	면 적(㎡)	가 구 번 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35,772.00	Ⅰ	1lot	24,690.00	감) 16.00	24,674.00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Ⅱ	1lot	2,016.00	증) 16.00	2,032.00	완충녹지 (기부채납)
			2lot	1,133.00	-	1,133.00	공 원 (기부채납)
		Ⅲ	1lot	590.00	-	590.00	주차장 (기부채납)
		Ⅳ	1lot	2,872.00	-	2,872.00	도 로 (기부채납)
			2lot	143.00	-	143.00	도 로 (기부채납)
			3lot	864.00	-	864.00	도 로 (기부채납 제외)
		Ⅴ	1lot	3,464.00	-	3,464.00	종교용지 (존 치)

1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중 임대주택 건설계획』 참조

18.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변경없음)

가.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참조

19. 관계도서

가. 정비계획 변경 결정 관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 도시재생과(☏031-940-4776)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끝.